ĐIỀU ƯỚC QUỐC TẾ

Thông báo số 19/2022/TB-LPQT ngày 18 tháng 5 năm 2022 về việc điều ước quốc tế có hiệu lực: "Công hàm trao đổi sửa đổi Quy tắc cụ thể mặt hàng quy định tại Phụ lục 3-A của 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tự do giữa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và Chính phủ nước Đại Hàn Dân Quốc"

(Tiếp theo Công báo số 413 + 414)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산화물 · 수산화물 · 과산화물	
		2816.10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6.40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과산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7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2817.00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8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8.10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8.20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8.30	-수산화알루미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9		산화크로뮴과 수산화크로뮴	
		2819.10	-삼산화크로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20		산화망간	
		2820.10	-이산화망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1		산화철 · 수산화철 · 어스컬러(earth colour)[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이철(Fe_2O_3)로서 계산하여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821.10	-산화철과 수산화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1.20	-어스컬러(earth colou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2		산화코발트,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2822.00	-산화코발트,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3		산화티타늄	
		2823.00	-산화티타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4		산화납 · 연단(鉛丹) · 오렌지납	
		2824.10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 · 메시코트(massico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5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 · 금속산화물 · 금속수산화물 · 금속과산화물	
		2825.10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5.20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5.30	-산화바나듐과 수산화바나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5.40	-산화니켈과 수산화니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5.50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5.60	-산화게르마늄과 이산화지르코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5.70	-산화몰리브덴과 수산화몰리브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5.80	-산화안티모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2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6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 · 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과 그 밖의 플루오르착염	
			-플루오르화물	
		2826.12	--플루오르화알루미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6.3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 빙정석(氷晶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7		염화물 · 산화염화물 · 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 · 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 · 산화요드화물	
		2827.10	-염화암모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7.20	-염화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염화물	
		2827.31	--마그네슘 염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7.32	--알루미늄 염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7.35	--니켈 염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7.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2827.41	--산화염화구리와 수산화염화구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7.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브롬화물과 산화브롬화물	
		2827.51	--브롬화나트륨이나 브롬화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7.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7.60	-요드화합물과 산화요드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28		하이포아염소산염 ·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 아염소산염 · 하이포아브롬산염	
		2828.10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9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요드산염과 과요드산염	
			-염소산염	
		2829.11	--염소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0		황화물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0.10	-황화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1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31.10	-아이티온산나트륨과 슬폭실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2		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2832.10	-아황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2.20	-그 밖의 아황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2.30	-티오황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3		황산염 · 명반 ·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황산나트륨	
		2833.11	--황산이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황산염	
		2833.21	--황산마그네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33.22	--황산알루미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3.24	--황산니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3.25	--황산구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3.27	--황산바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3.30	-명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3.40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4		아질산염과 질산염	
		2834.10	-아질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질산염	
		2834.21	--질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3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5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 ·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 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5.10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와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인산염	
		2835.22	--인산일나트륨이나 인산이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5.24	--인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5.25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5.26	--그 밖의 인산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폴리인산염	
		2835.31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3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6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836.20	-탄산이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6.3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6.40	-탄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6.50	-탄산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6.60	-탄산바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2836.91	--탄산리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6.92	--탄산스트론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3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7		시안화물 · 산화시안화물 · 시안착염	
			-시안화물과 산화시안화물	
		2837.11	--시안화나트륨과 산화시안화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7.20	-시안착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9		규산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규산나트륨	
		2839.11	--메타규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0		붕산염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사붕산이나트륨[정제붕사(精製硼砂)]	
		2840.11	--무수물(無水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0.20	-그 밖의 붕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0.30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1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2841.30	-중크롬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1.50	-그 밖의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아망간산염 · 망간산염 · 과망간산염	
		2841.61	--과망간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1.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1.70	-몰리브덴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41.80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2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아지드화물은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2842.10	-규산의 겹염이나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3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	
		2843.10	-콜로이드 귀금속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은 화합물	
		2843.21	--질산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43.30	-금 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3.90	-그 밖의 화합물과 아말감(amalga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4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이나 연료핵친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화합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과 잔재물	
		2844.10	-천연 우라늄과 그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천연 우라늄이나 천연 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4.20	-우라늄 235 를 농축한 우라늄과 그 화합물, 플루토늄과 그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 를 농축한 우라늄 · 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4.30	-우라늄 235 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그 화합물, 토륨과 그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 를 열화시킨 우라늄 · 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4.40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와 소호 제 2844.10 호 · 제 2844.20 호 · 제 2844.30 호의 것은 제외한 이들의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사성 잔재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44.5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5		등위원소(제 2844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등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5.10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6		희토류(稀土類)금속 · 이트륨 · 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 · 유기 화합물	
		2846.10	-세륨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7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7.00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9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9.10	-탄화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49.20	-탄화규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50		수소화물 · 질화물 · 아지드화물 · 규화물 · 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849 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2850.00	- 수소화물 · 질화물 · 아지드화물 · 규화물 · 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849 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52		무기나 유기의 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2852.10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5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53		인화물(燐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그 밖의 무기화합물[증류수나 전도도수(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 공기[희가스(rare gas)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압축 공기, 아말감(amalgam)[귀금속의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2853.10	-시아노겐 클로라이드(chlorcya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5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			제 29 류 유기화학품	
	29.01		비환식탄화수소	
		2901.10	-포화비환식탄화수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	
		2901.21	--에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1.22	--프로펜(프로필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1.23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1.24	--1,3-부타디엔과 이소프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		환식탄화수소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	
		2902.11	--시클로헥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20	-벤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30	-톨루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크실렌	
		2902.41	--오르토-크실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42	--메타-크실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43	--파라-크실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44	--혼합크실렌이성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50	-스티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60	-에틸벤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2.70	-큐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903.11	--염화메탄(염화메틸)과 염화에탄(염화에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12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13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14	--사염화탄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15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3.21	--염화비닐(염화에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22	--삼염화에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23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 브롬화 · 요드화유도체	
		2903.31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할로겐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2903.71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72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3.73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74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75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76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77	--기타(불소와 염소만으로 퍼할로겐화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78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탄 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903.81	--1,2,3,4,5,6-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82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헵타클로르(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3.83	--미렉스(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방향족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903.91	--클로로벤젠, 오르토-디클로로벤젠, 파라-디클로로벤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92	--헥사클로로벤젠(ISO)과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93	--펜타클로로벤젠(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94	--헥사브로모비페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4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04.10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4.20	-니트로나 니트로소화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과 과불화옥탄술포닐플루오라이드	
		2904.31	--과불화옥탄술폰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4.32	--과불화옥탄술폰산 암모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4.33	--과불화옥탄술폰산 리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4.34	--과불화옥탄술폰산 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4.35	--그 밖의 과불화옥탄술폰산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4.36	--과불화옥탄술포닐플루오라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2904.91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5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 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포화 1 가알코올	
		2905.11	--메탄올(메틸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12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 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13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14	--그 밖의 부탄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16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17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 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1- 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불포화 1 가알코올	
		2905.22	--비환식테르펜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 가알코올	
		2905.31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32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다가알코올	
		2905.41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42	--펜타에리트리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43	--만니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44	--디-글루시톨(소르비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45	--글리세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5.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비환식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5.51	--에스클로비놀(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6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	
		2906.11	--멘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6.12	-- 시클로헥산올 · 메틸시클로헥산올 · 디메틸시클로헥산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6.13	--스테롤과 이노시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방향족(芳香族)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6.21	--벤질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7		페놀과 페놀알코올	
			-1 가페놀	
		2907.11	--페놀(석탄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7.12	--크레졸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7.13	--옥틸페놀·노닐페놀과 이들의 이성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7.15	--나프톨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다가페놀과 페놀알코올	
		2907.21	--레소르시놀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7.22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7.23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8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할로겐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2908.11	--펜타클로로페놀(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2908.91	--디노셉(ISO)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8.92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9		에테르 · 에테르알코올 · 에테르페놀 · 에테르알코올페놀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비환식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11	--디에틸에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9.20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9.30	-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에테르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41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9.43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9.44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9.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9.50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9.60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0		3 원고리의 에폭시드 · 에폭시알코올 · 에폭시페놀 · 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0.1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0.2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0.30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0.40	-디엘드린(ISO, 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0.50	-엔드린(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1		아세탈 · 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1.00	-아세탈 · 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2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비환식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2.11	--메탄알(포름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2.12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환식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2.21	--벤즈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알데히드-알코올, 알데히드-에테르 · 알데히드-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알데히드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2.41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2.42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2.50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2.60	-파라포름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3		제 2912 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3.00	-제 2912 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		케톤 · 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비환식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11	--아세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4.12	--부탄온(메틸에틸케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13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22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23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방향족 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31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4.40	-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50	-케톤-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케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퀴논	
		2914.61	--안트라퀴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62	--코엔자임 Q10[유비데카레논(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4.71	--클로르데콘(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포름산, 그 염과 에스테르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5.11	--포름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12	--포름산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13	--포름산의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초산과 그 염, 무수(無水)초산	
		2915.21	--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24	--무수(無水)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초산에스테르	
		2915.31	--초산에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32	--초산비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33	--초산노르말부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5.36	--초산디노셉(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4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 디클로로 아세트산 · 트리클로로 아세트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50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60	-부탄산 · 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70	-팔미트산 · 스테아르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 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6.11	--아크릴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12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13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14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15	--올레산 · 리놀레산 · 리놀렌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16	--비나파크릴(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20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방향족(芳香族) 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6.31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6.32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34	--페닐아세트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비환식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7.11	--옥살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12	--아디프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13	--아젤라산·세바스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14	--무수말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7.20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7.32	--오르토프탈산디옥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33	--오르토프탈산디노닐과 오르토프탈산디데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34	--그 밖의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35	--무수프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36	--테레프탈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37	--테레프탈산디메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는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8.11	--락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12	--타르타르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13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14	--시트르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15	--시트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16	--글루콘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17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8.18	--클로로벤질레이트(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8.21	--살리실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22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23	--그 밖의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30	-알데히드·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2918.91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9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9.1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0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11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아인산 에스테르와 그 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21	--디메틸 포스파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20.22	--디에틸 포스파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0.23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0.24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0.30	-엔도설판(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		아민관능화합물	
			-비환식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11	--메틸아민 · 디메틸아민 · 트리메틸아민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12	--2-(엔,엔-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13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21.14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비환식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21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22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30	-포화지환식아민·불포화지환식아민·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41	--아닐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42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43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21.44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45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46	-- 암페타민(INN)·벤즈페타민(INN)·덱스암페타민(INN)·에틸암페타민(INN)·펜캄파민(INN)·레페타민(INN)·레브암페타민(INN)·메페노렉스(INN)·펜터민(INN),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방향족(芳香族)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51	--오르토-페닐렌디아민·메타-페닐렌디아민·파라-페닐렌디아민·디아미노톨루엔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아미노알코올(둘 이상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11	--모노에탄올아민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12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22.14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15	--트리에탄올아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16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에탄올암모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17	--메틸디에탄올아민과 에틸디에탄올아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18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아미노나프톨 · 그 밖의 아미노페놀(둥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 · 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21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아미노-알데히드 · 아미노-케톤과 아미노-퀴논(둥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22.31	-- 암페프라몬(INN) · 메타돈(INN) · 노르메타돈(INN)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아미노산(등중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41	--리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42	--글루탐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43	--안트라닐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44	--틸리딘(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50	-아미노-알코올페놀 · 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3		제 4 암모늄염과 수산화 제 4 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23.10	-콜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3.20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3.30	-과불화옥탄 술폰산 테트라에틸암모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3.40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데실디메틸암모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3.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11	--메프로바메이트(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4.12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포스파미돈(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24.21	--우레인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4.23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4.24	--에치나메이트(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4.25	--알라클로르(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이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11	--사카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5.12	--구루테치미드(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25.21	--클로르디메포름(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10	-아크릴로니트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6.20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6.3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6.40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7		디아조화합물 · 아조화합물 · 아족시화합물	
		2927.00	-디아조화합물 · 아조화합물 · 아족시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8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2928.00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9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	
		2929.10	-이소시아네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0		유기-황 화합물	
		2930.20	-티오카르바메이트와 디티오카르바메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0.30	- 티우람모노술파이드·티우람디술파이드·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0.40	-메티오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0.60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탄티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0.70	-비스(2-하이드록시에틸)술파이드[티오디글리콜(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0.80	-알디카브(ISO),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3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1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1.10	-테트라메칠납, 테트라에칠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1.20	-트리부틸틴 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유기-인 유도체	
		2931.31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1.32	--디메틸 프로필포스포네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1.33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1.34	--3-(트리하이드록시시릴)프로필 메틸포스포네이트 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1.35	--2,4,6-트리프로필-1,3,5,2,4,6-트리옥사트리포스피네인 2,4,6-트리옥사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1.36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31.37	--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1.38	--메틸포스폰산과 (아미노이미노메틸)우레아의 염(1 : 1)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1.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붙지 않은 푸란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2.11	--테트라히드로푸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12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13	--푸르푸릴 알코올, 테트라히드로 푸르푸릴 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14	--수크랄로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32.20	-락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2932.91	--이소사프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92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93	--피페로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94	--사프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95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붙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11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3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붙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21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붙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31	--피리딘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32	--피페리딘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33	-- 알펜타닐(INN)·아닐레리딘(INN)·베지트라마이드(INN)·브로마제팜(INN)·디페녹신(INN)·디펜옥실레이트(INN)·디피파논(INN)·펜타일(INN)·케토베미돈(INN)·메틸페니데이트(INN)·펜타조신(INN)·페치딘(INN)·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펜사이클리딘(INN)(PCP)·페노페리딘(INN)·피프라드롤(INN)·피리트라미드(INN)·프로피람(INN)·트리메페리딘(INN)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33.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3.41	--레보파놀(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52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53	-- 아로바르비탈(INN)·아모바르비탈(INN)·바르비탈(INN)·부탈비탈(INN)·부토바르비탈(INN)·싸이클로바르비탈(INN)·메틸페노바르비탈(INN)·펜토바르비탈(INN)·페노바르비탈(INN)·섹부타바르비탈(INN)·세코바르비탈(INN)·비닐비탈(INN)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54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 유도체(바르비투르산)와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55	-- 로프라졸람(INN)·메크로콰론(INN)·메타콰론(INN)·지페프롤(INN)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33.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붙지 않은 트리아진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61	--멜라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락탐	
		2933.71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72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79	--그 밖의 락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33.91	-- 알프라졸람(INN) · 카마제팜(INN) ·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 · 클로나제팜(INN) · 클로라제페이트 · 델로라제팜(INN) · 디아제팜(INN) · 에스타졸람(INN) · 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 · 플르디아제팜(INN) · 플루니트라제팜(INN) · 플루라제팜(INN) · 할라제팜(INN) · 로라제팜(INN) · 로르메타제팜(INN) · 마진돌(INN) · 메다제팜(INN) · 미다졸람(INN) · 니메타제팜(INN) · 니트라제팜(INN) · 놀다제팜(INN) · 옥사제팜(INN) · 피나제팜(INN) · 프라제팜(INN) · 피로발레톤(INN) · 테마제팜(INN) · 테트라제팜(INN) · 트리아졸람(INN)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92	--아진포스-메틸(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4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10	-붙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4.20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4.30	-페노티아진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34.91	-- 아미노렉스(INN) · 브로티졸람(INN) · 클로티아제팜(INN) · 클록사졸람(INN) · 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 · 할록사졸람(INN) · 케타졸람(INN) · 메소카브(INN) · 옥사졸람(INN) · 페몰린(INN) · 펜디메트라진(INN) · 펜메트라진(INN) · 서펜타닐(INN)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5		술폰아미드	
		2935.10	-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5.20	-엔-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5.30	-엔-에틸-엔-(2-히드록시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5.40	-엔-(2-히드록시에틸)-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5.50	-그 밖의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36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등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6.21	--비타민 A 와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22	--비타민 B1 과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23	--비타민 B2 와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24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 나 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25	--비타민 B6 와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26	--비타민 B12 와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27	--비타민 C 와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36.28	--비타민 E 와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29	--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90	-기타(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7		호르몬 · 프로스타글란딘 · 트롬복산 · 류코트리엔(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프로테인 호르몬, 글리코프로테인 호르몬,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11	--소마토트로핀, 그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7.12	--인슐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21	-- 코르티손 · 히드로코르티손 · 프레드니손(데히드로코르티손) · 프레드니소론(데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37.22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7.23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7.50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8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 · 에테르 · 에스테르 · 그 밖의 유도체	
		2938.10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 · 에테르 · 에스테르 · 그 밖의 유도체	
			-아편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39.11	--양귀비 줄기 농축물, 버프레노핀(INN)・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INN)・에틸모르핀・에토르핀(INN)・헤로인・히드로코돈(INN)・히드로모르폰(INN)・모르핀・니코모르핀(INN)・옥시코돈(INN)・옥시모르폰(INN)・폴코딘(INN)・테바콘(INN)・테바인,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20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30	-카페인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에페드린과 이들의 염	
		2939.41	--에페드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42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43	--캐친(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44	--놀에페드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테오피린 · 아미노피린(테오피린-에틸렌디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39.51	--페네틸린(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맥각 알칼로이드와 그 유도체, 이들의 염	
		2939.61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62	--엘고타민(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63	--리세르그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식물성의 것에 한정한다)	
		2939.71	-- 코카인 · 엑고닌 · 레보메탐페타민 · 메탐페타민(INN) ·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및 이들의 염 · 에스테르 · 그 밖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39.8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4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 · 유당 · 맥아당 · 포도당 · 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 · 당아세탈 · 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 2937 호 · 제 2938 호 · 제 29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940.0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 · 유당 · 맥아당 · 포도당 · 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 · 당아세탈 · 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 2937 호 · 제 2938 호 · 제 29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41		항생물질	
		2941.10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41.20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41.30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41.4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41.50	-에리즈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4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42		그 밖의 유기화합물	
		2942.00	-그 밖의 유기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			제 30 류 의료용품	
	30.01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 · 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3001.20	-선(腺)이나 그 밖의 기관의 추출물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		사람의 피, 치료용 · 예방용 ·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 ·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 · 독소 ·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3002.11	--말라리아 진단 테스트 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12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13	--면역물품(혼합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14	--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20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30	-백신(동물의약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0.03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 3002 호 · 제 3005 호 · 제 3006 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3003.1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3.20	-기타(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제 2937 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003.31	--인슐린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3.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3003.41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3.42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3.43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003.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3.60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3002 호 · 제 3005 호 · 제 3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004.1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20	-기타(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제 2937 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004.31	--인슐린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32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이들의 유도체나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00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004.41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42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43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50	-기타(제 2936 호의 비타민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60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5		탈지면 · 거즈 · 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 · 반창고 · 습포제)으로서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005.10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6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 4 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3006.10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 ·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 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의 텐트,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6.20	-혈액형 분류용 시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6.3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6.40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6.50	-구급상자와 구급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6.60	-제 2937 호의 호르몬과 기타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006.70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3006.91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6.92	--폐(廢)의료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			제 31 류 비료	
	31.01		동물성 ·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 ·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3101.00	-동물성 ·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 ·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2.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황산암모늄, 황산암모늄 · 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3102.21	--황산암모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102.3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4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50	-질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60	-질산칼슘 · 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80	-요소 ·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90	-기타(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혼합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3		인산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과인산석회	
		3103.11	--오산화인(P2O5)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1.04		칼륨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4.20	-염화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4.30	-황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등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105.10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등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20	-질소·인·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3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4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질소와 인을 함유한 그 밖의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105.51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60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			제 32 류 유연용 · 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 · 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 · 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32.01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그 염 · 에테르 · 에스테르 · 그 밖의 유도체	
		3201.10	-퀘브라쵸 추출물(quebracho extrac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1.20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2		합성 유기유연제 · 무기유연제 · 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202.10	-합성 유기유연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3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3.00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11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2	--산성 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매염(媒染)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204.13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4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5	--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6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7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9	--기타(소호 제 3204.11 호부터 제 3204.19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착색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20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5		레이크 안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5.00	-레이크 안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2.06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 3203 호 · 제 3204 호 · 제 32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3206.11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 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20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	
		3206.41	--군청(群靑)과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42	--황아연을 기본 재료로 한 리도폰(lithopone) · 그 밖의 안료와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50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2.07		조제 안료 · 조제 유백제(乳白劑) · 조제 그림물감 · 법랑 · 유약 · 유약용 슬립 ·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 · 에나멜공업 · 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 · 알갱이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3207.10	-조제 안료 · 조제 유백제(乳白劑) · 조제 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7.20	-법랑과 유약 · 유약용 슬립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7.30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7.40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 · 알갱이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8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 ·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3208.10	-폴리에스테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8.20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9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3209.10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0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 · 래커(lacquer) · 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3210.00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 · 래커(lacquer) · 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1		조제 드라이어	
		3211.00	-조제 드라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2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 · 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 · 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3212.10	-스탬프용 박(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2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3		화가용ㆍ학생용ㆍ간판도장공용ㆍ색조 수정용ㆍ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등글넓적한(tablet) 모양인 것ㆍ튜브들이ㆍ병들이ㆍ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	
		3213.10	-세트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4		유리 접합용 퍼티(putty)ㆍ접목용 퍼티(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ㆍ실내벽ㆍ마루ㆍ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3214.10	-유리 접합용 퍼티(putty)ㆍ접목용 퍼티(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5		인쇄용 잉크ㆍ필기용 잉크ㆍ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쇄용 잉크	
		3215.11	--흑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2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			제 33 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 · 화장용품	
	33.01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앱설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 · 불휘발성유 · 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정유(essential oil)(감귤류로 한정한다)	
		3301.12	--오렌지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1.13	--레몬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정유(essential oil)(감귤류 외의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301.24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1.25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1.30	-레지노이드(resinoid)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211.20 호, 제 1302.14 호 및 제 1302.19 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 1211.20 호, 제 1302.14 호 및 제 1302.19 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33.02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302.10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3		향수와 화장수	
		3303.00	-향수와 화장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3304.10	-입술화장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4.20	-눈화장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4.3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3304.91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3.05		두발용 제품류	
		3305.10	-샴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5.20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5.30	-헤어 래커(hair lacqu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6		구강 · 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	
		3306.10	-치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6.20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7		면도용 제품류 · 인체용 탈취제 · 목욕용 조제품 · 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 ·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 · 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307.10	-면도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7.2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7.30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	
		3307.41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7.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			제 34 류 비누 · 유기계면활성제 · 조제 세제 · 조제 윤활제 · 인조 왁스 · 조제 왁스 · 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 ·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조형용 페이스트(paste) · 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 · 케이크 모양 · 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 워딩(wadding) · 펠트(felt) · 부직포	
			-비누 ·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 · 케이크 모양 · 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 워딩(wadding) · 펠트(felt) · 부직포	
		3401.11	--화장용(약용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1.20	-그 밖의 모양의 비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1.3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 · 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 · 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34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402.11	--음이온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2.12	--양이온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2.13	--비이온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2.20	-소매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3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 · 볼트나 너트 방출제 · 방청제 · 부식방지제 · 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 · 가죽 · 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는 것	
		3403.11	--방직용 재료 · 가죽 · 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3403.91	--방직용 재료 · 가죽 · 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4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3404.2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5		신발용 · 가구용 · 마루용 · 차체(coachwork)용 · 유리용 · 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 · 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 · 워딩(wadding) · 펠트(felt) · 부직포 · 셀룰러 플라스틱 · 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 3404 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3405.10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 · 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5.20	-목제가구 · 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 · 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405.30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5.40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 · 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6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3406.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7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 · 말굽 모양 · 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3407.00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 · 말굽 모양 · 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			제 35 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35.01		카세인(casein) · 카세인산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카세인 글루(casein glue)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501.10	-카세인(case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0 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알의 흰자위(egg albumin)	
		3502.11	--건조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2.2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3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인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제 3501 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는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503.00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인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제 3501 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4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504.00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5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 · 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3505.10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5.20	-글루(glu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6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6.10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506.91	--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7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	
		3507.10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6			제 36 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6.01		화약	
		3601.00	-화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6.02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3602.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6.03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3603.00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6.04		불꽃제품 · 신호용 조명탄 · 레인로켓(rain rocket) · 안개 신호용품과 그 밖의 화공품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604.10	-불꽃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6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6.05		성냥(제 3604 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3605.00	-성냥(제 3604 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6.06		페로세륨 · 그 밖의 발화성 합금(어떤 모양이라도 가능하다), 이 류의 주 제 2 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3606.10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 · 액화가스연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6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			제 37 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7.01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 · 평면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 · 판지 · 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평면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701.10	-엑스선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Xem tiếp Công báo số 417 + 418)

VĂN PHÒNG CHÍNH PHỦ XUẤT BẢN

Địa chỉ: Số 1, Hoàng Hoa Thám, Ba Đình, Hà Nội
Điện thoại liên hệ:
- Nội dung: 080.44417; Fax: 080.44517
- Phát hành: 080.48543
Email: congbao@chinhphu.vn
Website: http://congbao.chinhphu.vn
In tại: Xí nghiệp Bản đồ 1- Bộ Quốc phòng